



재해 개요

- 2023. 6. 4.(일) 13:10경, 충남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재해자가 바지선을 타고 저수지 내 수변공원으로 이동 중 고정 바지선 인근 나무와 수변공원 부유 구조물에 묶여 있던 유도로프가 풀려 이를 다시 묶기 위해 저수지에 입수하여 수영으로 이동 중 사망함



재해 발생 원인

- 구멍을 위한 배 및 구멍장구(구멍환, 구멍조끼) 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**
 - 사업주는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멍을 위한 배 또는 구멍을 위한 구멍장구를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, 구멍을 위한 배 및 구멍환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구멍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바지선을 타고 이동함
- 바지선 작업 전 유도로프 묶임 상태 등 점검 소홀**
 - 사업주는 재해일 기준 8~9개월 전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나 유도 로프의 묶임 상태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수상작업 시 구멍조끼 착용 및 구멍환 또는 구멍을 위한 배 비치**
 - 근로자가 수상작업(물 위에 이루어지는 작업) 같이 물에 빠지는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작업장소에 구멍을 위한 배 또는 구멍장구의 비치, 구멍조끼를 착용하는 등 등 구멍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작업시작 전 로프 상태 확보**
 - 로프 사용 전,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